

# 유교적 가족윤리의 해체 전기(前期: 1880년대 초부터 1919년 3·1운동이전까지)에 있어서의 가족윤리 실상

The State of the Family Ethics in the Period of the Early Deconstruction of Confucian  
Family Ethics (From the Beginning of 1880's to the 3·1 movement of 1919)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이정덕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

Professor : Lee, Jeong-Deok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요약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가족윤리 해체전기(1880년대 초부터<br>1919년 3·1운동 이전까지)에 있어<br>서의 가족윤리 실상 |             |

## <Abstract>

This study was inquire into the state of the family ethics during the period of the beginning of 1880's to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which has been the black period in the history of Korean family ethics.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analyzing the newspapers, magazines, related literature and articles of the period.

It was the beginning of the 1860's and by the "Cheondo-Kyo" (the Religion of the Heavenly) way that the issues regarding the equality of sexes as the central concern of the modern family ethics came to be the object of the social discourse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The social discourse had come to be positively activated around 1900, when the intellectuals of the "Korean enlightenment" had begun to feel necessity of the modernization of Korean sociality and the importance of the women education as the essential part of it.

However, the activation of the social discourse itself, especially with the newspapers of that period did not mean the changes of the traditional Confucian family ethics, but the discourse of the modernizing forces had become the seeds for changing the family ethics of the Korean people.

The made chauvinistic nature of the family ethics of the period was not so much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eceding patriarch societies, but the state of the family ethics during the period are characterized by several social phenomenon such as the rising needs of using the "Hangle"(Korean alphabet) instead of Chinese character for the equal education of the both sexes, increasing practices of the early marriage, customs of trade marriage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 of excessive wedding presents, and regarding social consciousness of the traditional family ethics as patriotics attitude against the Christian rejection of the ancestor worship ritual.

## I. 서론

근대 가족윤리 구조의 핵심사항인 남녀평등의 문제가 논의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개인의 차원을 탈피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최초로 사회적 담론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1860년대초 천도교에 의해서였다고 하겠다.

최수운(崔水雲)이 동학(東學)을 창도한 것은 1860년의 일이다. 동학의 창도 동기는 이 세상은 도저히 이대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말세관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하여 선천(先天)의 낡은 시대는 물러가는 대신에 후천(後天)의 시대가 돌아오느니 만큼 과거의 낡은 도덕, 낡은 사상에 입각한 낡은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도덕, 새로운 원리에 입각한 새살림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 동학이야말로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새원리이며 신생활 이념이라고 최수운은 주장하였다. 그가 말하는 후천개벽의 새원리란 과거의 사고방식과는 반대로 모든 사물을 고찰하는 것을 말한다.

최수운은 차별적인 과거의 유교윤리에 항거하여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없고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없다. 따라서 양반도 없고 상놈도 없다.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평등 윤리를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였다(백세명, 1958, 1월호, pp. 76-78). 그러나, 최수운이 주장한 평등의 주된 내용은 사회적 계급 차별에 대한 철폐에 있는 것이지 가족내 부부에 있어서의 평등은 남녀평등의 연장선상에서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실례로, 최수운은 동학을 창도한 직후 여비(女婢) 두 사람을 속량(贖良: 해방)하여 한 사람은 며느리로 삼고 한 사람은 수양딸로 삼았다. 이 사건이

당시 엄청난 물의를 일으켜 대다수 천민 대중을 동학의 깃발아래 몰려 들게 하였다거나 양반 유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케 했다는 것은 곧 사회적 신분차별의 폐지에 천도교의 평등성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학을 창도한지 5년만에 최수운이 처형되는 제 요인 중 하나로서 작용한 것도 남녀평등보다는 신분차별의 철폐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도교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사상이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인간생활의 행복은 그 기본이 가정화평에 있고, 가정화평의 근본은 부부가 화순함에 있고 부부화순의 근본은 남편이 아내를 공경함에 있나니 도를 닦는 사람이 만일 아내를 공경치 않으면 하느님께서 노하신다」(백세명, 1958, 1, p. 77)고 가정에 있어서의 여성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자생적 남녀평등사상은 천도교의 몰락으로 인하여 사회적 담론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당시 견고한 봉건적 남존여비의 사상에 함몰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다가 남녀평등 문제가 담론의 형식을 지니고 사회적으로 논쟁이 일기 시작한 것은 서구사상의 도래와 사회적 관심을 여론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즉 신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1880년대초부터였다고 하겠다.

1890년대에 이르러 가족윤리를 둘러싼 담론이 신문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화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전통적 가족윤리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담론은 문제제기와 시비를 논하는 토론의 성격을 지닌 것이어서, 이러한 개화세력의 사회적 담론내용이 민중의 가족윤리를 변모시키는 데는 당시의 사회적 조건 및 실상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요하게 된다.

개화세력들에 의하여 가족윤리문제가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사회적 담론으로 활성화되었던 1900년 전후 당시의 민중적 개화실상은 어떠한가?

「근일에 어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말하기를, 지금 세계상 서양 각국이 아무리 강성하고 재주가 많다 하여도 우리나라를 감히 엿보지 못할 것이 우리나라가 몇천 년 예의 지방으로 내려오던 나라이요 저 서양국이란 나라들은 본시 서방 오랑캐 나라로 명색(明色: 문명화)된 지가 몇백년이 못 될뿐더러 저희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기묘묘한 재주가 있을 지라도 세상이치가 그러할 리가 없을 것이 우리나라도 필경은 그 사람들의 재주를 대적할 사람이 있을 터이요. 또 청국이 아무리 죽게 되었다 하되 설마 서양국에게 망할 리가 만무한 즉 필경은 그 나라들이 동양에 꿈쩍 못할 운수가 있을 터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철모르고 지각없는 사람들이 소위 개화한다고 외국을 갔다 오며 외국사람들 집에 내왕하는 사람들을 보니 우리나라 풍속은 다 못쓰겠다고만 하고 외국사람의 풍속은 다 좋고 아름답다고만 한 즉,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다 환장이 되어 그런 것이지 세상에 운수와 이치는 생각지 못하고 당장 목전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고 홍보는 말들이 자자 하더라.」(독립신문, 1899. 5. 5)

라는 논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화된 소수의 지식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민중은 유교 전통적 중화사상에 안주하고 있다.

민중들의 이와 같은 사상적 봉건성으로 인하여 당시 대부분의 농촌사회는 개화와는 거리가 먼 전통적 유습이 상존한 상황이었다. 그 실상을 「독립신문」은 1898년 10월 22일자 「시폐개탄론(時弊慨嘆論)」이라는 논설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1) 굶는 일- 굶을 잘하여야 귀신도 안정하고 사람도 평안하지 개화를 해서는 무엇하리. 무당이 영검(靈檢: 영험)하지 개화가 영검할까?
- 2) 경 읽는 일- 경을 읽어야 사람의 집에 사귀(邪鬼: 요사스러운 귀신)를 쫓아내지 개화를 해서 평안할까!
- 3) 복구(復舊: 옛날로 돌아감) 기다리는 일- 복구가 되어야 좋지 개화가 되어서 좋은가. 어언간 진인(眞人: 도교의 깊은 眞義를 닮은 사람)이 내달으면 복구가 자연 되겠지.
- 4) 구습(舊習) 자랑하는 일- 옛적 풍속이 다 좋지 개화 풍속을 좋다고 할까. 선조적부터 전하여 오는 말이

있지. 「새 법(法) 더 내지 말고 옛 법 줄이지 말겠지.」

- 5) 관행훈금(官行罰禁: 관원의 행차시 잡인을 물러서게 하는 일) 하는 일- 훈금(잡인을 물러서게 함)을 하여야 관장(官長)행차에 위엄이 있지. 그저 지나가면 무슨 위엄.
- 6) 기생 성(盛)하는 일- 기생이 있어야 고을 모양이 되지 기생이 없으면 무슨 모양.
- 7) 신문 싫어 하는 일- 신문을 내야(발행해야) 개화가 될까? 될 때가 되어야 되지. 신문이 있기로서 우리 할 일을 하지 못할까!
- 8) 신학교(新學校) 막는 일- 신학교는 오랑캐의 글. 우리에게 무슨 상관. 공맹서(孔孟書)를 잘 읽어야 수신·제가·치국·평천하지도(平天下之道: 평천하의 도)를 다 하지.

.....

슬프다. 각도 관찰사와 각군 군수들은 다 우리 대한국 오늘날 문명진보하는 정부로 조차(부터) 내려 오건마는 그 가운데 문명주의 하는 이는 하나도 없고 합동(合同)하여 나중까지 일신(日新: 날이 새롭게 함)하는 길을 돌아보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이다지도 무심하며 이다지도 완고한지 참 알 수 없는 일이다. 시골 개화형편은 이같으니 .....」

이처럼 1890년대말 농촌의 개화 상황은 유교적 전통의 구습에 젖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윤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주요한 장으로 개화지식인들이 이용했던 신문이 민중의 가족윤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당시 신문이 지니고 있었던 세가지 사회학적 조건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시골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개국이후에 없던. 신문이라 하는 것이 수년 이래로 생겨 정부대신을 시비하며 백성더러 자유권을 찾으라, 압제를 받지 마라, 외국에 가서 유람하라, 외국학문을 배우라 하니 이것은 다 이전에 못하던 말이다. 그런 법이 어디 있으며 우리 시골로 말하더라도 신문이 도리어 해가 되는 것이 원(員: 고을 수령)의 잘못된 일이 신문에 나면 의례히 (경성에) 올라가 말한 줄 알고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곤욕이 자심(滋甚: 심함)하니 신문에게는 해(害)가 비상(非常: 예사롭지 않음)하고 신문에 나서 제일 빠르고 효험있는 것은 무세(無勢: 세력이 없는)한 사람이 혹 잘못하

는 일이 있다. 신문에 나면 벼슬이 떨어진다든지 죄를 당하며 유세(有勢: 세력이 있음)한 사람이면 아무리 못된 일(을) 한 것이 신문에 나더라도 쓸데 없으니 (이) 일로 본다면 신문이 어두운 사람 열어 개명시키고 민국간에 유익하기는 새로이 무세(無勢)한 사람에게만 적악(積惡: 남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함)이라. 신문을 길게 두었다가는 무세한 사람은 살 수 없고 또 신문사 형편을 들은 즉 여러 천원씩 들어가며 이(利) 한푼도 못보고 당장 경비에 군색히 지낸다니 신문내는 사람들은 지각없는 것이 내 돈 들어가며 남의 원수되고 적악하고 무슨 까닭으로 하는지 실로 딱한 일이다」(독립신문, 1899. 5. 10) 라는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민중들은 신문을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을 미쳐 실제로는 해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과

둘째는 당시 일본의 경우 사람 3명당 1부씩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으나 조선의 경우 신문 총발행부수가 몇천장에 불과하여 신문의 구독자가 극소수 개화지식인에 불과하였으며(독립신문, 1899. 5. 10)

셋째, 서재필·윤치호·이상재·남궁억 등이 독립신문을 발행한 주역이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신문을 발행한 주체들은 개화된 지식인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또한 보수세력은 신문을 기피하여 신문 논설에 등장하고 있는 가족윤리관련 담론들은 대부분이 서구평등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유교 전통가족윤리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들이다.

1910년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뒤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농업국이였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 또는 가족이다. 전통적 방식의 농업은 협동집단으로서의 가족이 가장 중요하였으며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일반인에게 있어서 가족은 가장 견고한 생존의 기초가 된다.

가족주의적 사고방식 내지 가치관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랜 전통이지만 나라를 빼앗기고 넓은 사회로 진출하는 길이 막히게 된 당시의 민중적 생활 중심은 더욱 가정으로 이동되어 갔다고 생각된다.

가정이 이처럼 삶의 터전으로서 견고성을 더해

가는 과정에 있었으면서도 개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1880년대 이후부터 부모와 자식의 윤리 및 효의 관념에 대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고 김태길은 말한다. 그 징후로서 김태길(金泰吉: 1996, pp. 239-241)은 이인직(李仁植)의 신소설 『설중매』(1909년)에 나타난 가족윤리 관련 내용을 들고 있다. 『설중매』의 주인공 이태순과 그의 친구 정송조가 부자윤리에 대하여 토론을 전개하는 대목이 그것이다. 이 대목에서 정송조는 우리나라의 완고한 부모들이 성장한 자식을 어린 아이같이 다루며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명령하는 것이나 자식의 효도를 받으려 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한다. 정송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이태순은:

- 1) 서양의 풍속이라고 모두 아름다운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것이라 하여 모두 나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마땅히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한다.
- 2) 부자(父子)의 윤리는 본래 우리나라의 것이 아름답다. 다만 부모가 자녀를 노예같이 대하여 구속하는 것은 잘못이니 이 점은 고쳐야 하나, 그 폐단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서둘러 천륜(天倫)을 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 3)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것을 갑자기 버리고 서양 것을 서둘러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 4)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겪는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 은공을 모르는 것은 결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소설의 주인공을 통해 표현된 작가 이인직의 이와 같은 가족윤리 관련 언급은 부모의 명령을 절대시하던 조선시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서구사상이 스며들기 시작한 흔적이라고 김태길(1996, p. 240)은 말하고 있다.

유교적 가족윤리의 해체과정을 살펴봄에 있어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 것은, 1910년대 일본 유학파를 중심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사회주의 사상이 3·1운동을 기점으로 당시 지식인들에게 보편화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가족윤리 담론은 좌파 지식인들에 의해 사회주의적

평등관에 입각한 가족윤리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담론적 특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화사상이 사회적 담론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1880년대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가족윤리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인 1919년 3·1운동이전을 유교적 가족윤리 해체 전기로 명명하였다.

그러면 이처럼 서구문물과 사상이 스며들기 시작한 1880년대 이후부터 사회주의 시각에서 가족윤리 문제가 논의되기 이전인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의 민중의 가족윤리 실상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1880년대 초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의 시기가 지니는 중요성은 조선조의 몰락과 일제 식민치하로 전락되는 정치적 격변기였다는 점과 현대와 맞닿은 최근의 시대라는 점에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다른 시기, 예를 들면 조선시대나 고구려·신라·고려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또한, 이 시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

- ① 현재 생존한 사대부가(士大夫家) 출신의 여인들을 대상으로 면접법을 통해 가족윤리 단편을 살펴보는 방식(신정숙, 1986)이거나
- ② 구한말 선교사들이 당시 풍물을 기록한 견문기 및 당시 발간되었던 잡지와 총독부에서 수집하여 기록한 민속자료를 이용하는 문헌적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방법들이 지니는 한계점은 :

- 첫째, 구한말 또는 일제 초기에 생활했던 현존 인물이 극소수이거나,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노령으로 기억력이 크게 상실되어 있다는 점과
- 둘째, 견문기나 총독부 수집 민속자료는 가족윤리의 단편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 자료로 당시 변동과정의 가족윤리를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 셋째, 잡지에 기고된 글들은 소수 지식인 계층의 주의 또는 주장만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일반 민중의 가족윤리를 역동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당시 신문에 나타난 가족윤리를 기본으로 하고, 잡지나 견문기록 및 총독부 수집 민속자료 등은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당시 발행되었던 신문을 분석의 주 텍스트로 한 이유는 :

- ① 신문은 변모되고 있는 사회상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 ② 변화의 성격과 정도 및 방향을 시계열적(時系列的)으로 파악할 수 있고
- ③ 일반 민중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연구 시기 및 분석 텍스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방법과 내용 분석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 III. 유교가족윤리 해체 전기 (1880년대 초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에 있어서의 가족윤리 실상

### 1. 부부윤리

1900년을 전후한 당시의 부부윤리에 대한 실상을 알아 볼 수 있는 단편적 사실들이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한 논설들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신문 논설을 통한 부부윤리 관련 내용들은 대부분 남편의 부인에 대한 예우와 부인관(婦人觀)에 대한 비판형식을 띄고 있는데, 이에 나타난 언급들을 종합해 보면:

- 1) 「암탉이 울어서 날이 새는 이치는 없는지라. 여자는 남자의 오장(五臟)이나 다름없으니 집안에 있어서 장부의 의복이나 음식을 만들고 자식이나 낳아 후사를 잇게 할 따름」(독립신문, 1898. 1. 4)이라는 전통적 부인관(觀)이 1900년대 전후 일반민중의 전반적인 것이었으며, 이러한 남편의 부인관에 사회일반에 상존했다는 것은 「동양 풍속이 어찌하여 사나이는 기와집 같다 하고 여

편네는 초가집 같다 하여 남녀간에 값이 높고 낮은 줄로 분별을 하는지 극히 개탄할 일」(독립신문, 1898. 1. 4)이라든가「사람들이 아버지는 소나무에 비하고 어미는 댕댕이 넝쿨에 비하는 것은 실로 옳지 못한 의논」(독립신문, 1898. 1. 4)이라는 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상은,「자기 여편네 박대하고 다른 여편네에게 음행하는 이는 10사람중 9명이 되지만, 여편네의 경우는 반대로 자기 남편을 박대하고 다른 남편에게 음행하는 이가 10여명중 1명밖에 되지 않는다」(독립신문, 1899. 1. 4)든가,「부모의 압제에 의한 조혼의 성행으로 인하여」 대한 사람중 십에 팔구는 부부간에 화순치 못하다」(독립신문, 1899. 7. 20) 또는「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의 집들이 화목하여야 할 터인데, 조선 서울은 안(도성內)만 보더라도 여편네들이 은근히 눈물을 흘리는 이가 많이 있으니 열번에 여덟 번은 남편이 박대를 한다든지 남편이 다른 계집을 상관하는 까닭」(독립신문, 1896. 6. 16)이라는 비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3) 「조선의 사나이가 여편네 대접하는 것을 보면, 정(情)도 없고 의(義)도 없고 참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대접하기를 사나이보다 천한 사람으로 하고 무리하게 압제하는 풍속과 억지와 위엄으로 행하는 일」이 성행하였다(독립신문, 1896. 4. 21).
- 4) 당시 부부윤리의 실상을 총체적으로 언급한 대표적 논설을 예시하면:

「우리가 수십년래로 동양풍속을 살펴 보건대 서양과 대단히 같지 아니한 것이 남자는 무슨 일이든지 부녀와 의논도 아니하고 제 임의로 하되 여인은 그렇지 못하여 남자의 관할받는 바가 되어서 매사를 남자의 명령(예)만 순종하니 참 이상한 일이다.

여인은 근본 자품(資稟: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이 연약하고 언어가 유순하여 다른 사람을 대적하는 강한 기운이 없으니 장부가 되어서 만약 관후한 마음과 공근(恭謹: 겸손하고 삼감)한 행실이 있을 것 같으면 마땅히 그 부녀 대접하기를 더욱 사랑하고 매우 공경할 것이거늘 심하다 대한 사람의 여인 학대하는 악습이여! 죄인을 옥안에 가둔 것 같이 부녀를 집안에 가두어 두

고 대문밖을 못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말소리도 크게 못하게 하며 그 아내가 집안일이라도 조금 간섭한다든지 그 남편 행사(行事)가 불미한 것을 만약 바른 말로 일깨우면 그 남편이 제 잡담하고 대책하는 말이 암탕이 새벽에 울면 나라가 불편한 법이요 여인의 소리가 대문밖에 나가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라 하여 입이 있어도 능히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발이 있어도 능히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고 눈이 있어도 능히 마음대로 보지 못하게 하니 이같이 여인을 압제하는 까닭에 아무리 지혜와 총명이 있어도 쓸데 없고 다만 의복짓기와 음식 만들기만 일삼아 무정한 세월을 고생으로 보내니 어찌 인색치 아니 하리오.

유서(儒書)에 있는 말이거니와 감결이라 하는 사람들에 가서 발을 매는데 그 아내가 점심밥을 가지고 나오거늘 (발이랑으로 인하여 넘어질까 염려하여) 비록 발이랑이라도 붙여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과 같이 하였다 하니 동양사람중에도 학문있는 이는 그 아내를 공대(恭待: 공경히 대접함)하였는데, 지금 대한 사람들이 여인을 천대하는 것은 다 학문(이) 없는 까닭이로다.

세계상에 문명한 나라 사람들은 남녀가 등분(等分)이 없는 고로 남자가 여자 대접하기를 동등으로만 할 뿐 아니라 도리어 더 존대하고 더 사랑하여 어느 좌석이든지 여인의 거처는 더 편안케 하여 주고 매사를 상의하여 아내의 지휘를 순종하니 그러고 보면 집안이 화평하고 만사가 여의하리로다」(독립신문, 1899. 5. 1 논설)

라고 당시 부부윤리가 전형적인 봉건적 남존여비 상태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 4) 개화지식인들이 남녀평등적 부부윤리를 주장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대한 여인에게 한마디 말씀을 붙이노니, 몇백년을 내려오며 남자에게 압제를 받다가 줄지에 동등권리를 주어서 무슨 일이든지 여인의 임의대로 하게 되면 저 학문없는 여인들이 별안간 세상 만났다고 양양 득의하여 대소사를 참섭(參涉: 남의 일에 참견하여 간섭함)치 아니하는 것이 없을뿐더러 도리어 남편을 이기려고 잔꾀의 일이 많을 것이니 만약 그 지경에 이를 것 같으면 그러한 여인들은 세계상에 용납지 못할지라. 극히 여인을 위하여 염려하거니와 대한 남자들은 개명코자 하거든 여인에게 동등권리를 주어 천대치 아니함이 천리에 합당하고 대한 여인들은 남자에게 압제를 면할수록 분수를 지켜 남편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함

이 인생의 당연한 바라」(독립신문, 1898. 5. 31) 하고 여인의 분수지키기와 여인에게 동등권리 주기를 남자에게 요구하고 있음에서 보듯이 당시 여인들은 배운 것이 없어서 남편으로부터 천대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유교적 부부윤리는 1915년대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왔음을 『상록수』(常綠樹)의 저자 심훈(沈薰)씨의 부인 이해영(李海暎)여사의 다음과 같은 회고담(『가정생활』1963. 2월호, pp. 32-35)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때(1915년 전후)만 해도 50년전 옛날이라 요즘같이 연애나 사랑이나 하는 말은 입밖에도 내지 못하던 때이고 혼인을 했다 해서 곧 한 방을 쓰는 것도 아니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어쩌다 사람앞에서 서로 마주치면 얼굴도 바로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이다. 나도 이와 같은 제도와 풍습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또 다른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시부모님을 지극히 받들고 남편의 옷바라지나 하는 것이 머느리가 된 도리요 갖 시집은 아내로서 할 일이었으며 또한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불평이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해영 여사의 회고담에 대한 사실성은 「그때(1910년대 초) 관례로는 남앞에서 신혼부부간에 공공연한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열세살짜리 신랑이 무슨 남편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랴만 좌우간 명색만의 혼인이요 내외였다. 따라서 남편구실도 할 수 없었고 우리 집에 낯선 식구 하나가 붙었다는 일 이외엔 나에게 별다른 마음의 변화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입장(入丈)한 나는 상투를 들고 갖을 머리에 써야 했다」는 이희승(李熙昇: 『여원』, 1960년 7월호, p. 220)의 회고담이나 새댁시절 남편의 동작에 대해서는 남에게 말해 본 기억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는 새댁시절 직접 말을 나눈 일이 없었다는 조선조말 사대부가 노인들의 일관된 인터뷰 내용(신정숙, 1986, p. 117) 등에서도 재확인 되고 있다.

특히, 부부윤리에서 흥미를 끄는 것은 사대부가 양반사회에서 국한적으로 사용되던 「나」라는 부부간의 상대방 호칭법(신정숙, 1986, p. 98)이 1910년대 이후 개화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점차 사회일반으로

확대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이며, 남편을 소천(所天)이라 하며 하늘같이 받들던 사대부가 양반사회에서 부부간에 서로 「나」라는 호칭을 부부공통으로 사용했던 것은 아주 가까운 내외간에 남편을 존경하여 「저」라는 말을 사용하면 서로 소원해 보여 「나」라는 말을 공통으로 사용했던 것일지는 모르나(신정숙, 1986, p. 98) 1950년 6·25이후 60년대 이르러는 이와 반대로 남편에 대하여 부인이 자기 자신을 호칭할 경우 동등표현인 「나」라는 말대신 낮춤표현인 「저」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 사실들을 토대로 할 때, 전기(前期)에 있어 민중의 일반적인 부부윤리의 실상은:

- 1) 사회현실에 있어서의 부부윤리는 남존여비적인 전통적 부부윤리 그대로였으며
- 2) 단지 변화된 것이 있다면, 남존여비적인 부부윤리문제가 개화지식인들에 의해 남녀평등이라는 인격적 관점과 남녀평등교육이라는 개화의 관점에서 사회담론으로 적극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 3) 이러한 논의는 남녀 아동의 동등교육을 1차적으로 가져왔고, 이에 의하여 부부윤리의 평등성에 대한 실천적 요소가 자녀에게 신식교육을 시켰던 일부 가정속에서 배태되기 시작했으며
- 4) 이를 바탕으로 일부 가정에서 남녀평등과 부부평등에 대한 잠재적 힘이 축적되어 1919년 이후 후기(後期)에 점차 실질적인 부부윤리 변화로 이어지는 실용적 교육 담론 상태에 있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전기에 있어서의 가족윤리에 대한 담론은 부부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남녀평등을 중심으로 교육평등이라는 발전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부부윤리는 남녀평등 교육을 통해 언급되는 간접화법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부부윤리의 간접화법적 형식성으로 인하여 개화세력의 부부평등에 대한 사회적 담론에 대해 유교전통의 수구세력은 강렬하고도 직접적인 반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 시기의 부부윤리에 대한 변동적 징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부윤리는 현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관습에 의존하고 자녀윤리는 미래지향적 관념에 의존함

으로써 가족윤리에 관련된 서구지향적 담론이 1900년을 전후하여 사회적으로 격렬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윤리의 실제에 있어서는 신식교육을 받은 여자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1910년대 말까지 유교전통적 상태 그대로 존속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부부평등에 대한 문제는 봉건적 윤리 소유자 뿐만 아니라 신식교육을 받은 남자의 경우에도 가부장적 가치관을 선호한 남성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부부윤리는 법에 의해 강제성을 발휘할 수 없고, 단지 사회적 통념과 인간의식의 변화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변모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2. 부모-자녀간 윤리

한성순보 및 독립신문·제국신문·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부모-자녀간 윤리 담론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윤리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윤리 중 효를 중심으로 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윤리는 불변윤리로 간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윤리에 집중되고 있다.

이것은, 유교윤리 해체 전기에 있어 부모-자녀간 윤리의 변화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윤리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윤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윤리가 유교 가족윤리 해체기의 주된 변화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신문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할 때, 변화의 핵심은 부모의 자녀관과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 인격 평등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 1) 자녀관

아들은 가문을 잇는 자로, 여자아이는 가사노동력 또는 재물로 파악하여 부모의 노후를 담당하는 미래가정의 하부구조로 파악하였던 것이 유교적인 일반민중의 자녀관이였다. 여기서 가장 중시되었던 것이 「효」이며 가문이었다. 가문에 개인의 인격은 매몰되었으며, 자녀는 단지 부모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 결과 전통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한가정

의 부모와 자녀관계로 파악된 것이 아니라 가문의 자녀로 파악됨으로써 전통적 유교의 자녀관은 아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 가문의 계승과 번창 및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고 조상을 받들 예비자라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1880년대 이후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탄으로 인하여 일반 민중에서는 이와 같은 전통적 자녀관이 개인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담보하는 경향, 즉 가문보다 개인의 가정경제라는 재화론적 자녀관으로 변질되어 갔다.

이러한 경향의 일단을 1903년 5월 13일자 논설에서 제국신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어떤 무지한 늙은 자식을 몇백량 돈 천씩 받고 남의 종으로도 팔고 창기로도 팔아 먹는 폐단이 있으니 자식을 낳아서 애지중지하게 길러 가지고 여간 돈 백에 팔려서 지극히 천하고 일평생 금사망(金絲網:무엇에 얽히어 벗어날 수 없음)을 벗어나지 못할 곳에 팔아 먹는 놈이야 어찌 사람의 천성이 있다 하겠소.

우리가 소문을 들은즉, 자식 팔아 먹는 것은 제일 평안도가 심하고 그 다음 황해도 함경도라 하는데 생겨나는 여자는 사람이라 할 수 없고 무슨 짐승이라 하여도 마땅할 듯 하겠소.

그런 이유를 설명하오리다. 남녀간에 같이 사람으로 생겨나서 남과같이 동등권리는 찾지 못할망정 소위 부모란 사람이 딸을 낳아 기른 후에 가난한 자는 칠팔세 요 부자는 십삼사세만 되면 혼인한다 언론이 되어 중매가 내왕할 때에 신랑집의 덕행은 고사하고 빈부도 물을 것 없고 다만 돈의 다소를 논란하는데, 아무리 칠팔세된 계집아이라도 엽전 이삼백량 없이는 혼인 정할 마음을 못내고 그렇지 않으면 오륙백, 천여량씩 먼저 주어야 정혼(定婚)이 되고 돈만 받은 후에는 혼인을 잘지내든지 못지내든지 상관없이 신랑에(계) 의복 한가지 만들어 주는 법이 없으니 그런고로 여자를 많이 기른 자는 부자가 된다 하고 또 그렇게 혼인을 지내고 있으니……」

이 논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한 지방에서는 여자아이를 혼인시 돈을 받고 파는 풍습이 유행하여 여자를 많이 낳아 기른 자가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며, 그 가격이 칠팔세된 일반 여아의 경우 엽전 이삼백량이었으며, 얼굴이 잘 생긴 경우는 오륙백에서 천여량이어서 가난한 자는 결혼할 엄두를 못낼 정도였다는 사실에서 여자아이에 대한

당시 일부 지역의 자년관을 알 수 있으며, 남부지역의 경우 북부지역 정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가사노동력의 일부로 간주했음을 각 가정에서 여아들에게 공부하는 가르치지 않고 집안에만 가두어 가사일만 배우게 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에서 살펴 볼 아들과 딸에 대한 부모의 차별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반증되고 있다.

## 2) 아들-딸간의 인격 평등관계

전기에 있어 부모의 자녀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이 어떠했는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아들·딸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당시 부모들이 딸을 천시하고 아들을 귀하게 여겨 남자아이에게만 교육을 시키고 여자아이에게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점에 집중하여 사회발전과 평등윤리의 관점에서 남녀평등 교육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담론이 진행되던 당시의 여자아이 교육실상은 어떠했는가? 1900년을 전후한 여자아이의 교육실상을 보면:

- 1) 「슬프다. 여자도 사람이라 남자와 더불어 형용은 다르나 그 지혜와 총명과 의리는 호발(毫髮: 추호)도 남자에게 질 것이 없건마는 본국 풍속에 계집자식은 본래 가르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 짐작(생각)하기에 심지어 여자가 학문이 있으면 첫째는 명도(命道: 팔자)가 기박(奇薄: 팔자가 사나웁고 복이 없음)하고 둘째는 가장을 업수히 여기고 셋째는 음란하기 쉽다하여 사람의 도리를 깨우칠 성경현전(聖經賢傳: 성현이 지은 책) 가르치기는 꿈에도 생각이 없을 뿐더러 일용사물을 (글로 쓰는데) 없을 수 없고 지극히 용이한 국문도 짐짓 가르치지 않는 자 왕왕 있으니 이 어찌 한심치 않으리오」(제국신문, 1903. 6. 19)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는 바와 당시 각 가정에서는 여자애들에게 국문도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었으며
- 2) 「동양풍속을 본즉... 남녀가 7세만 되면 자리를 같이 앉지 않는다 하여 딸을 낳게 되면 깊은 도장(방: 여자가 거처하는 규방)안에 가두어 밖에

물정은 구경도 못하게 하고, 예전 여아들은 약간 학문을 가르쳐 열녀전·효행록이나 보게 하더니 지금은 그것조차 가르치지 아니하니 빈중한 백성의 딸은 언문까지 배우지 못하였으니 여간 침선과 밭짓는 법이나 알면 출가를 시키니.....」(독립신문, 1899. 5. 26)에서 보듯이 1890년대에는 그 이전보다 여자의 교육이 더욱 등한시 되었고

- 3) 남녀 7세 부동석에 대한 실상은, 여학교 설립에 따른 교사채용 관련 잡보기사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학부(學部)에서 여학교를 설립하려고 해 학교 규정을 방장(方將: 지급 곧) 꾸미는데 교원 2인을 두려 하며.....

지금 들은즉 찬양회 부인들이 말하기를, 대한 남자들이 아직 구미 각국 남자와 같이 개명이 투철히 덜 된 까닭에 여자와 매양 혼잡지폐(混雜之弊: 질서없이 뒤섞이어 몹시 혼란스러운 폐단)가 없지 않을지라. 학부에서 만일 남자로 여학교의 교원을 파송한다면 남녀 혼합하는 마당에는 피차간 내외분열이 필연 문란할뿐더러 여학도들이 남자교원에게 가서 교육을 아니 받을 지니 어찌 돌탄(嗚嘆: 혀를 차며 탄식함)치 아니 하리오.

부인회중에 서기(書記)하는 부인은, 한문과 국문이 유식한 남자에서 (교사를) 나리지(선발하지) 않고 또 외국부인중에 대한 말과 국문과 한문을 잘 아는 이가 있어 월급을 먹지(받지) 않고라도 대한 여자들을 교육하기로 부인회원들과 이왕부터 면약(面約: 마주보고 약속함)한 터이니 학부에서는 구태어 월급 먹여(주는) 남자교원을 보내지 말고, 월급 아니 먹고 여자교육만 극진히 하려는 서기(書記) 부인과 외국부인을 여회(女會)에서 자하로 청빙(講聘: 초빙)하게 하여 주면 사리에 합당하고 남녀 혼잡지폐가 없을 듯 하다고 한다더라」라는 기사(독립신문, 1899. 3. 4 잡보)에서 보듯이 교사 전반에 있어서도 남녀유별이 그대로 사회의 기본윤리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7세 이상의 남녀지별이 엄격했던 조선조 시대 당시 교육을 담당했던 서당훈장이 남자들이었다는 점도 여자아이를 서당에 보내지 않게 된 여러 요인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으며,

- 4) 「계집자식 가르치기는 고사하고 사내아이들도 가르칠 생각이 없어 도성 내외의 거리 거리(는) 아이들 천지되되 글 배우러 다니는 놈은 보지 못하겠고 음담패설로 허튼 맹세와 돈치기 윗놀이와 남의 집으로 돌팔매질하여 무슨 기명(器名: 살림살이에 쓰는 온갖 그릇) 깨뜨리기와 권력먹기로 일을 삼고 기껏 하는 생업이 군밤장사요 여자로 말하건대 생활에 보고 듣는 것이 아무집은 세간이 무엇 무엇이요 의복치레가 약시약시(若是 若是: 여차 여차)하여 호강이 대단하고 아무집 딸은 아무 부자의 집으로 시집을 가는데 선체가 무엇 무엇이요 갖은 패물에 무엇이 어떠한고 아무 것은 약시(若是: 여차)하다 하며 보고 듣는 일이 한가지도 정도(正道: 올바른 것)는 없으니 그 계집아가 어디로 조차(부터) 학문과 덕업이 생기리오」(제국신문, 1903. 6. 21)라고 당시 어린이들의 비정상적 일상성을 지적하고 있다.
- 5)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개화지식인들은, 「조선 정부에서 제일 급하게 할 일이 사내아이들도 가르치려니와 계집아이들을 교육할 생각을 하여야 할 터인데 조선서는 계집아이들은 당초에 사람으로 치지를 아니하여 교육들을 아니 시키니 전국 인구중에 반은 그대로 내버렸는지라 어찌 아깝지 않으리오.

학부에서 사내아이들도 가르치려니와 불쌍한 조선 계집아이들을 위하여 여학교 몇을 세워 계집아이들을 교육시킬 것 같으면 몇해가 아니 되어 전국 인구 반이나 내버렸던 것이 쓸 사람들이 될 터이니 국가경제학에 이런 이(利)는 없고, 또 천히 하고 박대하던 여인들을 사나이들이 자청하여 동등권을 주는 것이니 어찌 의리에 마땅치 않으며 장부의 하는 일이 아니리오」(독립신문, 1896. 9. 5) 하면서 자녀에 대한 남녀동등교육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녀동등교육의 담론이 개화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과정속에서 역사상 최초로 1898년 9월 1일 동농 김가진씨와 송촌 지식영씨가 여학생을 위한 국문학교를 창설코자 「여학교 설치통문(設施通

文:설치를 알리는 공고문)」을 발표하였다. 여학교 설립취지와 당시 여자아이들에 대한 교육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통문내용중 주요부분을 요약하면:

「.....어찌하여 우리 여인들은 일향(一向: 한결같이) 귀먹고 눈 어두운 병신모양으로 구규(舊規: 옛 관습)만 지키고 있는지 모를 일로다. 혹자 신체와 수족과 이목이 남녀가 다름이 있는가? 어찌하여 병신모양으로 사나이가 벌어(다) 주는 것만 먹고 평생을 심규(深闢: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에 처하여 그 절제만 받으리오.

먼저 문명 개화한 나라를 보면 남녀가 일반 사람이라 어려서부터 각각 학교에 다니며....., 장성한 후에 사나이의 부부지의(夫婦之義)를 정하여 평생을 살더라도 그 사나이에겐 일호(一毫:조금도) 절제를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극히 공경함을 받은 다름이 아니라.....

슬프다. 돌이켜 전일을 생각하면 사나이의 위력으로 여편네를 누르고 구설(舊說)을 빙자하여 여자는 거내(居內)불언외(居內而不言外:여인의 말이 담밖으로까지 들려서는 안된다) 하며 유주식시의(有酒食時宜:절따라 술빛고 음식만 만들면 된다)라 하니 어찌하여 신체수족이 남자와 다름없는 사람으로 다만 밥과 술이나 지오리오.

도금(이제)에 심규를 진폐(盡廢:없앴)하고 신식을 시행함에 우리도 혁구종신(革舊從新:옛것을 혁신하여 새것을 따름)하여 타국과 같이 여학교를 설치(設施)하고 각각 여아들을 보내어 각항(여러) 제주와 규칙과 행세(행동)하는 도리를 배워 일후에 남녀가 일반 사람이 되게 할 차(하고자) 방장(方將:이제 곧) 여학교를 설치하오니.....」

1898년 9월 1일

통문고표인(通文告表人: 광고인): 이소사(李召史), 김소사(金召史)

이와 같은 여성중심의 여학교설립운동에 대해 독립신문은 1898년 9월 13일자 「여인교육」이란 논설에서, 「여학교 통문을 본즉 대한 여인들이 여학교를 설치하는 일은 대한에서 처음」이라면서 「대한 금일 사정을 보면 속이 답답하여 나라일이 아니되는 것을 보면서도 호소 무처(無處)라. 정부에 말해야 들은 체도 아니하고 백성에게 물어 보아야 조금도 진기(振起: 정신을 차리어 일어남)하는 기운이 없으

1) 「소사」란 말은 성(姓)아래 붙여 과부를 점잖게 부르는 말. 이소사란 이재락씨를 일컫는 말이며 김소사란 김가진씨를 가리킨다: 필자 주)(독립신문, 1898. 9. 9 「잡보」

나 이러한 정부와 이러한 백성이 무슨 개화 진보에 큰 사업을 이루리오」라고 탄식하면서 여인중심의 사립여학교 설립을 대대적으로 치하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학부(學府)에서도 1898년초 여학교 실시의 안을 정부회의에 제출하고 있지만(독립신문, 1899. 5. 26) 무산 되었다.

1890년대초 미국을 방문하여 여러해 동안 정치와 풍속을 관찰하고 저술한 기행문속에서 「그 나라의 성하고 쇠함과 교화의 행하고 폐함은 반드시 그 나라 부녀의 지식과 학문을 보아 아는 법」이라는 유명한 글을 남긴 영국 하의원(下議院) 의원이었던 「푸란스」가 1890년대 말 조선을 방문, 「우리가 대만에 나와 풍속과 법률을 보고 들은즉 여자의 학교는 하나도 없는 모양이오. 여아들을 가르치치 아니하니 전국 부녀의 학식이 반드시 몽매할지니 부녀가 무식하고 어두운 즉 자기 권리를 또한 찾지 못할 것이요 부녀의 권리가 없는 즉 나라일에 더욱 상관이 없을지라. 연즉(그러한 즉) 집안일을 다스리기에 도 반드시 부족한 일이 또한 많을 터이거늘 어찌 하물며 나라 일을 꿈엔들 생각할 이치가 있으리오」(독립신문, 1899. 9. 7 「논설」) 라든가 제국신문 1903년 6월 19일자 논설, 즉「우리나라 국문(학글)의 관계와 여학교의 관계는…… 대양 유지미취(有志未就: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함)하고 인순(因循: 내키지 아니 하여 머뭇거림)하여 지내기가 몇몇 해에 실효를 보이기는 적은지라. 연전(年前)에도 동농 김가진씨와 송촌 지석영씨가 국문학교를 창설하기로 하였다가 어찌하여 실효를 보이지 못하고, 인하여 무성무취(無聲無臭: 아무 소리도 없이 일을 성취시키지 못함)히 그만 두었고 또 월전(月前)에 조동완씨가 교장이 되어 국문학교를 실시한다 하기로 우리가 응마(願望: 우리러 바람)하고 바라기를 이번에는 그 학교가 설치되어 실효를 볼까 바랐더니 재우금(再又今: 또다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몇 달에 또다시 어떻게 된다는 말이 없으니」라는 언급에 의하면, 여학교는 1903년까지도 사립이든 공립이든 그 어느 것도 설치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아들과 딸에 대한 인격적 평등을 교육 평등에서 1차적으로 찾고자 한 것은 여성의 자주적 자아인식

과 학문적 지식을 통해 여성 스스로의 힘에 의한 남녀차별 철폐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개화되지 않고는 가정에서의 아들과 딸에 대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이 이룩될 수 없다고 본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개화척도로서의 아동에 대한 신교육 상황은 어떠한가?

- 1) 1896년 당시 학교에 다니는 학생수는 인구 5천명당 1명꼴도 되지 않았으며(독립신문, 1896. 9. 5)
- 2) 1898년 경성(지금의 서울)내 관립 소학교는 총 9개였고 총 학생수는 838명이었으며(독립신문, 1898. 7. 6)
- 3) 1903년의 경우, 경성내 총학생수는 천명이었고 각지방 사립학교 학생수를 모두 합쳐 전국적인 총학생수가 만명을 넘지 못하였으며(제국신문, 1903. 5. 2)
- 4) 1899년을 기준으로 한글을 아는 남녀 비율을 보면, 남자는 전체 남자의 1/100도 안되었고 여자의 경우는 전체 여자의 1/1000도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독립신문, 1899. 3. 11).

이와 같은 교육실상은 1900년대초 선각자들의 구국적인 교육운동에 힘입어 민간중심의 사립학교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곧이은 일제의 교육탄압에 의하여 1910년대부터 침체기에 접어든다.

이 여성 교육운동과정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사회적으로 남자에 비해 천대시한 여성을 교육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개화세력들이 한글을 교육문자로 선택할 것을 강력 주장하였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에게 당시 쓰기 쉽고 배우기 쉬운 「한글」이라는 문자가 없었다면 남녀평등교육에 대한 개화세력의 사회적 담론이 아무리 강렬했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여성교육은 지연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사회·경제적 이유로는:

- 1) 전통적으로 남존여비 사상속에서 문자는 남자에게만 가르쳐 왔고 1900년 전후의 사회적 풍조도 여자아이에게는 공부를 시키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 2) 경제적으로 일반 민중의 경우 대부분 여자아이

는 고사하고 남자아이 마저도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극단적 빈곤상태에 있었고

- 3) 「한문을 가지고 교육시키자면 우선 한문신문·잡지·서책을 볼 만치 공부한다 해도 적어도 오륙년의 세월을 허비」(제국신문, 1902. 3. 11)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착안하여 개화세력들은 한문을 버리고 한글을 국문으로 채택하여 어린이의 교육을 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 그들의 주장을 보면:

- 1) 세계 각국은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진보하고 있는데, 책을 읽기 위한 문자를 익히는데만도 최소한 5-6년의 세월이 걸리는 한자로는 서구 각국과 학문적 경쟁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지는 하루가 급하며
- 2) 가난한 가정 경제상황속에서 남녀를 평등하게 교육시키려면, 삼사일만 배우면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한글」을 우리나라 문자로 채택해야 한다는 문자학습의 실용성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러한 제 주장들은 신문논설에서 다음과 같이 표명되고 있다.

「한문을 가지고 교육시키자면 우선 한문신문·잡지·서책을 볼만치 공부하해도 소불하(少不下: 적어도) 오륙년의 세월을 허비해야 되겠고 형편은 하루가 급한지라……」

우리나라에서도 갑오경장 초에는 관보까지 국한문을 섞어쓰게 마련하였더니 근대에 이르러는 이것 저것 거론할 겨를없이 되었거니와 우리 백성은 이 글(한글)로 인하여 효험이 적지 않다…… (일본과 청국이 글자를 쓰기 쉽게 고치는 것은) 사세(事勢)가 이전 태평무사할 때와 판이하여 백성을 깨우치며 학문을 밝히는 것이 시 각이 바뀔 줄 깨달은 연고이거늘, 하물며 우리나라에는…… 삼백년래로 내려오는 글이 본방음(本方音: 우리나라 말)에도 못할 말이 없고 외국말을 번역할 때도 별로 어려울 것이 없어서 배우기와 쓰기에 이롭고 경편(輕便: 사용하기에 편리함)한지라, 외국사람이 배워보고 깊이 탄복하는 바……」(제국신문, 1902. 3. 11)라든가 「국문이 우리나라 교육 개명상에 대단히 유조(有助: 유익)함은 사람마다 거의 다 짐작하는 바라……」

게으르고 무식하여 국문·한자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며칠 공부만 하면 각색(각종) 책을 못볼 것이 없

을지니……」(제국신문, 1903. 2. 3)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 1) 부모와 자녀간의 윤리는 부모가 아들과 딸을 동등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 2) 아들과 딸의 평등문제를 개화지식인들은 교육평등에서 추구하고 있으며
- 3) 1900년을 전후한 전기에 있어서의 아들-딸 평등의 지평(地平)인 여자교육은 여자학교 설립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단지 그 필요성만 사회에 확산되었을 뿐
- 4) 1899년 당시, 한자는 제외하고 한글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를 아는 비율이 남자는 전체 남자의 1/100, 여자는 전체 여자의 1/1000도 안된다는 사실에 나타나 있듯이 일반 민중 대다수의 가정에 있어 아들과 딸의 차별은 조선조와 비교하여 극히 미미한 정도의 개선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 5) 아들과 딸의 인격적인 평등실천 과정에서 흥미를 끄는 것은, 한글의 국문채택과 남녀교육평등이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는 점이며,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교육을 통한 아들과 딸의 평등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시기적으로 훨씬 늦어졌을 것이란 사실이다.

### 3. 핵심적 가족윤리에 관련된 부차적 가족윤리

정부주도하 근대적 가족윤리의 개혁을 시도한 것은 1894년 단행된 갑오개혁이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의 의안에 가족제도에 관한 변혁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 1) 자식(嫡妾子)이 없을 때는 양자를 허락하고
- 2) 남녀의 조혼(早婚)을 엄금하며, 남자는 26세 여자는 16세 이상으로 결혼 최저 연령을 제한한다.
- 3) 과부의 재가는 귀천에 관계없이 자유에 맡기며
- 4) 공사(公私)노비의 전(典)은 일체 개파(改罷)하고 인신매매를 금한다고 되어 있다.

관습은 하루아침에 개혁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률적 강제성을 동원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가족윤리의 이와 같은 속성으로 인하여 근대적 가족제도를 지향하는 내용들이 1894년 법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 가족윤리와 깊이 관련을 맺고 있는 조혼이나 이혼, 개가문제, 여성의 인신매매 및 첩문제 등은 사회적 불안과 경제파탄으로 인하여 엄격한 유교윤리가 동요되기 시작했던 1900년을 전후해 조선중기보다 더 세속화되고 일반 민중계층에 확산되었다.

독립신문과 제국신문 논설의 가족윤리 관련 주제별 빈도 수에 따르면, 1900년을 전후하여 핵심적 가족윤리와 관련된 부차적 가족윤리중 사회적 담론 대상이 되었던 주요 주제는 조혼과 첩문제 및 결혼 풍습에 관한 것들이었다.

독립신문은 1899년 10월 7일자 논설에서 조혼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무릇 사람의 부모되는 직무는 그 어린 아들과 딸들을 강장(強壯: 몸이 튼튼하고 혈기가 왕성함)하게 양육하고 명민하게 교도하여 한가지 업(業: 직업)과 한가지 일이라도 능히 저의 힘으로 할만한 연후에야 비로소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며 재산도 전하여 주어 세간에 자유하는 자격을 잃지 않게 함이 당연하거늘 각기 부모들의 생각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기혈이 충실치 못한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재촉하여 장가가게 하고 시집가게 하니 저 학문없고 지식없는 어린 아이들이 인간 부부의 쾌락한 참재미를 어찌 알리오. 다만 어린 내외간에 동무끼리 놀고 희롱질 하는 것으로만 알고 교합(交合: 성교)함을 그릇행하여 처음에 맹동(萌動: 어떠한 생각이나 일이 일어남)하는 봄기운으로 하여금 연기(年記: 대강의 나이)를 재촉하여(결혼을 재촉하여) 일찍들 죽게 하니 이는 풀의 움이 시초잡아 날 즈음에 서리와 눈으로 그 연약한 바탕을 눌러 죽임과 무엇이 다르리오.

어린 아이들의 점점 자라나는 기관이 먼저 상하여지고 기혈의 운동하는 것이 이어 노둔(魯鈍: 어리석고 둔함)하여 평생에 활발한 생기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며 하느님께서 붙여주신 목숨을 찢르고 줄어지게 하여 정신이 혼몽하여 좋지 못하게 하나니 그 낮빛을 본 즉 걱정과 수심하는 빛을 항상 띄우고 그 형용이 반드시 나타나서 학문과 일을 하는데 나태함을 스스로 내고 동작하고 생각하는데 참고 견뎌를 능히 못하여 백년에 합직한 인사들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이 어려운 고막(痼疾: 뿌리가 깊어 바로잡기 어려운 폐단)을 이루게 하니 어느 겨를에 살림살이 하는데 계획과 학문상의 연구할 여

력이 능히 미치리오. 설혹 천품 기질이 못사람보다 특별히 월등하게 뛰어나서 큰 병에 걸림은 비록 면한다 할지라도 방향을 정치 못하는 물같은 성품과 구름같은 마음이 방당한 색계상(色界上)에 침혹(沈惑: 무엇을 몹시 좋아하여 정신을 잃고 거기에 빠짐)하여 아침과 저녁마다 생각한다든 것이 모두 색욕에 벗어나지 못하므로 혹 어떤 사람들은 요망스러운 기생첩에게 편벽되어 고흥(蠱惑: 신비적인 아름다움 등으로 남의 마음을 호리어 자제심을 잃게 함)하여 육례(六禮: 혼인의 여섯가지 예법) 갖추고 귀밑머리 마주 낀 정실(正室: 첩에 대하여 본 아내를 이르는 말) 본처들을 박대하며 혹 구축(驅逐: 쫓아냄)도 하고 혹 어떤 사람들은 창부(娼樓: 娼妓와 노는 집)와 주사(酒肆: 술집)에 밤낮(매일) 가서 유련황망(流連荒忙: 이곳 저곳을 떠돌며 주색에 빠짐)하여 질탕스러이 놀고 돌아 갈 줄들을 모르고 제 조상에서 전래하는 재산을 한푼없이 탕진하여 모발(毛髮)이 눈빛같이 희도록 외입장(外入場: 오입쟁이가 드나드는 집)에만 정신이 회미하고 그 마음을 돌이킬 줄을 전혀 알지 못한 자들이 많으니 이것은 모두 이 청춘 소년때에 부귀한 사람들의 자제가 아닌 자가 몇 개(얼마)인고.

저 빈궁한 사람들의 자제들은 자연히 이것에 반대되어, 아이때부터 힘써 배우고 부지런히 사업을 아니하면 재물을 때울 기약이 망연(茫然: 멀고 아득함)하고 혼인하기 어려울까 하여 열심히 힘쓰고 가다듬어 그 학문과 사업이 성취하기에 이르는 때에는 연치(年齒: 「나이」의 높임말)가 자연 20이나 30에 이를지니 그때는 신체도 강장하며 지식도 발달하여 자기의 살림살이와 아내의 의식(衣食)까지 스스로 넉넉히 판비(辦備: 마련하여 준비함)할만한 한 연후에 혼인을 비로소 행하나니 그런즉 전자(前者)에 부귀한 자제들이 일찍이 혼인한 자로서 이 빈궁 자제들의 늦게 혼인한 자들을 본 즉 혹 비소(誹笑: 비웃음)를 할는지 아지 못하거나와 그 말경(末境: 끝판)에 이르러서 비교한 즉 일찍 혼인한 부귀 자제들과 늦게 혼인한 빈궁 자제들의 기혈이 활달한 것과 신체가 건강한 것과 학문이 발달한 것과 지식이 쾌창한 것과 동작이 임의로운 것과 질병이 적은 것과 목숨이 단축치 아니함이 판이하여 천양지간(天壤之間: 하늘과 땅사이)이 될지라.

그런고로 문명의 발달과 위생의 연구를 주밀(周密: 세밀함)케 하는 나라의 인민들은 대개 남자는 25-35세, 여자 20-26·27세에 이르러서 비로소 혼인들을 행하나 오히려 그 학문과 사업상에 방해가 된다 하여 그 혼인할 기한을 늘이는 자들도 많이 있거늘 대한에서는 혼인하는 기한을 더 늘려서 물리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혼인할 기한을 재촉하여 남녀간에 겨우 10세 내외가 될 것

같으면 빈궁하여 사력(事力: 일의 형세와 재력)이 미치지 못한 자들은 어찌 할 수가 없거니와 그 외에 부(富)하고 귀(貴)한 사람들의 자제들은 반드시 그 장가 보내고 시집보내기를 재촉들 하여 아직 털도 털 마른 어린 남녀들로 하여금 그저 부모의 무릎 아래서 쌍쌍이 놀게 하는 것은 인간의 비할데 없는 제일 낙사(樂事: 즐거움 일)라 칭하나니 생각지 못함이 어찌 그리 심할고.

만일 그 부모들이 깊이 생각하고 익숙히 궁구(窮究: 깊이 연구함)하여 일찍 혼인하는 해(害: 폐해)가 과연 그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죽이게 하며 지식을 방해롭게 함을 깨달은 즉 그 부모들의 그 자녀들을 애중(愛重: 사랑하고 중히 여김)하는 마음으로야 어찌 차마 이를 행하리요. 혼인을 일찍이 하는 해(害)는 비유컨대 아직 익지 못한 푸른감을 지레 따서 소금물에 담가 그 단맛과 그 일찍 붉은 것만 탐하고 그 감이 썩고 패(敗: 부패)하여 버려지가 나는 것은 깨닫지 못한 것과 한가지니 이러한 썩고 패(부패)하는 화근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재앙이 아니니 그런고로 가라대 푸른 감을 썩고 패(부패)하게 함은 그 감나무 임자의 허물이라 하며, 어린 남녀들을 요사(夭死: 나이 젊어서 죽음)하게 하는 것은 기(幾: 거의 다) 그 부모들의 죄라고 이를진저.

이 논설에 따르면,

- 1) 조혼을 10세 내외에 결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과
- 2) 조선 말기까지 아들은 부자집에서, 여아는 가난한 집에서 주로 조혼을 했으나(김두헌, 1985, p. 466), 1900년대를 전후해서는 부자집의 경우 남녀를 막론하고 조혼을 시켰으며, 가난한 집에서는 결혼풍습의 경제적 이유로 인해 주로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조혼이 행해졌다(제국신문, 1903. 5. 13)는 점과

3) 조혼은 부모들이 주도하였으며, 사회일반에 만연된 결혼관습중 하나였다는 점이다.

그러면, 폐단이 이처럼 심한 조혼은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얼마나 보편화 되었을까?

1912년 조선총독부 인구조사 자료인 「조선의 인구현황」을 토대로 여자 14세 이하의 남편 결혼 연령별 분포를 보면, 19세 이하가 66.4%로 가장 많으나 20세 이상 25세 미만도 25.2%로 전체 혼인건수의 1/4에 달하며, 15년 이상이나 연령차를 보이는 30세 이상 35세 미만인 경우가 1.3%, 20년 이상 차이는 경우도 0.5%에 달하고 있으며 조혼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총 결혼 건수중 여자 14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7.7%, 남자 19세이하 결혼 건수가 42.7%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조혼은 남자보다 훨씬 보편적이었으며, 성인 남성들이 14세 미만의 어린 여자아이를 결혼상대로 한 혼인 풍습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혼의 실상은, 독립신문 1898년 2월 15일자 논설에서 「대한 인민의 십분의 구가 조혼 상태」라는 언급에서 보는 것처럼 국세조사의 통계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조혼을 했으리라고 추측된다.

그 근거로서는, 1898년에 조사한 인구통계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당시 대한제국에서 조사한 인구 통계에 따르면 1898년말 현재 남자 295만 5천 44인, 여자 238만 5천 857인 총 534만 901인으로 1897년보다 가구는 2만여호, 총인구수는 20여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독립신문」은 논설에서 「대한 전국 인구가 2천만 동포라고 항상 말들을 한다더니 지금

〈표 2〉 여자 14세이하 남편의 연령분포도 (1912년도 기준)

부의연령 처의연령	19세이하	20세이상 25세미만	25세이상 30세미만	30세이상 35세미만	35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계
	14세이하	14,279	5,427	1,409	278	94	27	5	
백분율(%)	66.4	25.2	7.0	1.3	0.4	0.1	0.02	—	100.42
결혼수(건)	51,974 (42.7%)								결혼총건수: 121,648건(100.%)

※ 원자료: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22집 「朝鮮の人口現象」, p. 309.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5, p. 451 재인.

이 조사한 인구수효를 본 즉 남녀 도합이 겨우 534만 901명인즉 이천만에 비교하면 1천 465만 9천 99명이 부족이다. 인구가 이렇게 과다히 부족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슨 까닭인지 지방관리들은 응당 스스로 짐작할 듯 하도다」(독립신문, 1899. 5. 16)라고 통계조사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1910년대 초 일제에 의한 결혼 연령이나 형태조사에 대해 일반민중들은 극히 비협조적이었으며, 기피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한편, 조선조부터 널리 관습화되어 있던 첩제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도 1900년대를 전후해 가족윤리의 주요쟁점으로 거론되었다. 독립신문 1896년 6월 16일자는, 당시의 축첩 실태에 대해:

「근일 소문을 들은 즉 사람이 가난하고 곤궁할 때에는 자기의 아내덕으로 옷도 얻어 입고 조식도 얻어 먹고 지내더니 조금치라도 낫게 되어 돈푼이나 생기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같이 고생하던 아내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인정에도 마땅하고 의리상에도 옳거늘 돈 곧 생길 것 같으면 같이 고생하던 아내는 잊어 버리고 모르던 계집을 얻어 그 돈을 가지고 같이 쓰고 그 아내는 그저 고생만 할 뿐 아니라 남편이 잘 되었다고 집안에 첩이 하나 생겼은 즉, 그 아내의 마음에는 차라리 곤궁한 채 있는 것만 못한지라……

조선 서울은 안(도성內)만 보더라도 여편네들이 은근히 눈물을 흘리는 이가 많이 있으니 열번에 여덟 번은 남편이 박대한다든지 남편이 다른 계집을 상관하는 까닭이라.」

라고 기술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1900년대를 전후해 실제로 축첩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혼의 폐단과 유교적 축첩관습이 그대로 존속되었으며, 양반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종래의 축첩풍습이 1900년대를 전후해서는 유교윤리의 동요로 돈이 있는 일반민중들 사이에 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상을 떠나 경제적으로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 주로 행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축첩에 관련된 독립신문의 다음과 같은 두가지 종류 기사를 통해 이와 같은 경향을 알 수 있다.

「진위군 이공습의 아버지와 문치오가 한 동리에 사는데 문가가 이가의 아버지를 첩 도소사(「소사」란 칭호는 성밀에

쓰는 용어로 과부를 접잖게 부르는 말: 필자 주)를 유인하여 서울로 와서 살거늘 이가의 아버지가 그 머슴(머슴) 흥가를 데리고 서울와서 그 첩을 찾아 갈 즈음에 문가가 함께 따라 가다가 수원군에서 가만히 이가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 첩을 다시 빼 가져늘 추후로 머슴(머슴) 흥가에게서 발각이 된고로 죽은 이가의 처와 그 아들 이공습이가 여러 달을 근탐하다가 이달 구월에 삼청동 흥래문 안에서 문치오와 그 계실(繼室: 후실) 도소사를 잡아 저의 원수를 당장에 갚으려 하는 즈음에 중서(中書: 중부 경찰서) 순검 김정환이가 보고 말하되, 법률이 자재(自在: 있음)한 지라 원수 갚기는 일반인즉 어찌 사사로 처치하라 하고 문치오와 도소사를 잡아 이공습의 모자 안동(眼同: 입회)하에 경무청으로 보내었다 하니 문가와 도소사의 죄상을 법부(法府)에서 응당 법률로 시행하려니와 이공습의 아버지가 당초에 첩을 치가(置家:安置家의 준말, 첩을 얻어서 판 살림을 차림)하여 산 것도 법률밖의 일이요 이왕 잃어버린 첩을 다시 찾아 온 일도 큰 망령이라. 이가의 아버지가 그 지경에 이르고 어찌 온전하리오.」(독립신문, 1897. 1. 19 「잡보」)

이처럼 돈이 있는 일반인들도 첩을 두는 것이 성행하였으며, 특히 이 기사에서 흥미를 끄는 것은 남자의 축첩에 대해 관대했던 조선조와 달리 첩인 도소사 뿐만 아니라 축첩자인 이공습의 아버지도 함께 비난하고 있음이다. 다시 말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축첩에 관련된 당사자 모두를 비난하는 상태로 변모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 시기의 특징적인 현상은 봉건적 유교가족윤리의 핵심적 근간이었던 가장권이 당시 다수를 점하고 있던 경제적 빈곤 계층의 경우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1800년대 중반이후 국민경제는 정치적 불안과 관리의 부패, 서구열강의 이권 독점 및 일제의 경제적 수탈로 극도의 경제적 파산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결혼관습은 형식을 중시하는 전통적 관습에 매여 있었으며 매매혼이 유행했던 북부지방은 물론 전국적으로 결혼예물을 중시하는 풍조로 일반민중들은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시달렸으며, 물질을 중시하는 세속적 가치관이 결혼과 결합되면서 일반민중에 있어서의 가장권은 동요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결혼 풍습의 폐해로 인하여 파생된 일반민중사회에 있어서의 가장권 약화 현상을 「제국신문」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근일 여염가(일반 백성의 집) 혼인하는 풍속을 보건대 빈한한 사람은 장가들기가 매우 극난(極難: 극히 어려움)하고 만일 혼인을 지내려면 큰 빚을 져가며 혼인한 후에 주려 죽을지라도 당장에 신부집에서 청구하는 대로 죽을 힘을 다 들여 가며 혼인을 지내고 본 즉 몇 날이 지나지 못하여 시집은 새각시가 그 시부모 알기를 길가는 사람으로 알고 가장(家長) 대접하기를 초개(草芥: 하찮은 것)같이 하다가 불과 기일(幾日: 몇날 또는 며칠후에)에 친정으로 도로 달아나가거나 혹 타인과 배합하여 도망하거나 혹 노류장화(路柳牆花: 창녀)로 짐승 모양으로 팔려 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의식(衣食)을 그 가장에게만 의뢰하여 여간 자식개(자식들) 낳는 것으로 자세(藉勢: 자기나 남의 세력을 믿고 의지함)하고 가장이야 죽든지 무슨 못된 일을 하여서라도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만 제일로 알아서 그 가장은 현순백결에 거지모양을 면치 못하되 철 찾아서……」(제국신문, 1903. 6. 21)

1880년대 이후 정치와 사회적 불안으로 전통적 유교윤리가 불안정해지고 경제생활이 절대빈곤 상태에 이르러, 일반민중의 최대 관심은 생존권적 가정경제의 안정이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빈민 계층을 중심으로 유교전통적 가장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첫째, 전통적 유교가족 윤리의 근본(가장권)은 하층 빈민 계층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둘째, 부차적 가족윤리에 있어서 전통 가족윤리(These)에 대립되는 서구 가족윤리를 안티테제(Antithese)로 사회화 시킨 것은 소수 개화지식인들이었고  
셋째, 양반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 이상은 서구적 가족윤리를 지지하는 개화 지식인들의 주장을 무시하여 무대응 상태에서 유교 전통의 가족윤리를 실천적으로 고수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넷째, 일본에 유학한 개화지식인들이나 제사를 우상 숭배로 간주하여 조상숭배를 배척한 기독교 신자들을 통해 서구가족윤리가 수용됨으로써 일반 민중들은 전통적 유교 가족윤리의 고수를 애국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또한, 빈민 계층에서의 가장권에 대한 동요는 여성의 가출이나 이혼제기로 나타났으며, 1896년 5월 16일자 「잡보」에 실린 기사가 이러한 사례의 한 예에 속한다.

「고양 한덕남의 계집이 자기 사나이가 가난하니까 아니 살겠다고 계집아이 하나 데리고 서울로 도망하여 왔거늘 경무서에서 그 계집을 붙잡아 두고 사면(四面)에 방(榜: 榜文의 준말,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길거리 등에 써 붙이는 글)을 붙였으되, 그 사나이는 와서 찾아가라 하였더라」

여성의 이혼제기를 엄격히 금했던 유교 전통윤리가 1900년대를 전후해서는 이처럼 동요되기 시작했으며 그 동요가 1910년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1916년을 예로 들어 혼인한 사람중 이혼비율을 살펴보면 6%에 이르러 100명중 6명 가량이 이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혼 원인을 보면 학대·모욕이 44.8%, 약의 유기가 17.8%, 파렴치죄 13.7%, 생사불명이 9.6%의 순으로 되어 있다.

김두헌(1985, p. 529)은 이와 같은 통계자료에 대해, 이혼청구자가 남편인지 부인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체로 남편이 처를 학대 모욕하고 약의 유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가족 생

〈표 3〉 1910년대 이혼율

연 도 별	실 수	인구 천명당 비율
1911	5,621(명)	0.41(명)
1912	9,058	0.62
1913	9,915	0.65
1914	8,976	0.57
1915	7,965	0.50
1916	9,761	0.60
1917	10,542	0.63
1918	10,496	0.62
1919	9,737	0.58

자료: 조선총독부 편, 조선호구조사통계 (김두헌, 『한국가족제도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5, p. 526 재인)

<표 4> 이혼원인별 건수(1908-1922년)

원 인	건 수
1) 중죄(重罪)	39
2) 처의 간통	37
3) 남편의 간음	5
4) 파렴치	363
5) 학대 모욕	1,188
6) 악의 유기	471
7) 지계존속으로부터 학대 모욕	41
8) 직계존속에 대하여 학대모욕	103
9) 생사불명	253
10) 정신병	13
11) 나병	10
12) 남편의 벽지 이주에 동행을 원치 않음	1
13) 간통죄 징역 만기 출옥후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음	1
14) 교통불능(交通不能)	39
15) 성행불능(性行不能)	39
16) 도벽	6
17) 빈곤	14
18) 기질불량	4
19) 파렴치죄 이외의 범죄	6
20) 처의 실녀(實女)와 간음	1
21) 남편의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류됨	2
22) 남편의 불구 또는 질병	11
23) 혼인신고를 제출하지 않음	2
24) 전남편 아들의 혼가(婚家)를 남편이 원하지 않음	1
합 계	2,650

자료: 조선총독부 舊慣調査위원회 審査書  
(김두헌, 1985, p. 528 재인)

활에 있어서의 처 지위가 얼마나 열악했는가를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혼 원인중 처가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사유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때 처의 권한이 일정부분 조선조보다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김두헌은 이러한 원인 외에 사회내부에 잠재한 중대한 몇가지 원인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사회내부의 잠재적 중대 원인이란 결혼관습을 말하는 것으로 종래의 혼인이 혼인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기 보다 오히려 중매인을 통한 주혼자(主婚者), 즉 가장 혹은 이에 준하는 존족(尊族)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또 조혼

의 풍습이 널리 행해져 있었기 때문에 결혼후 성인이 된 다음 부부간에 불화한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하여 이혼 또한 많았다는 것이다.

위 통계자료는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민중의 이혼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특히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여성의 이혼청구와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더라도 가정내에서 가장권이 동요된 경우는 빈민계층을 중심으로 중산층까지 확산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을 요약하면 전기에 있어서의 부차적 가족윤리는:

- 1) 남녀동등교육, 특히 여성의 교육을 통해 가족내 인격 윤리 개념이 도입되고 있으며
- 2) 여성의 이혼 청구 증가를 통해 하층계급을 중심으로 가장권이 동요되기 시작했고
- 3) 과도한 예물과 매매혼적 성격의 풍습으로 인하여 가정 경제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빈곤 계층에서 가장권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 4) 특히, 이 시기 가족윤리의 특징은 서구 가족윤리를 지향했던 개화지식인 계급과 유교 전통적 가족윤리를 고수했던 대다수 수구세력이 대립되었던 시기로 경제적 빈곤계층인 대다수가 전통적 가족윤리의 동요를 일으킨 계층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근대 가족윤리 구조의 핵심사항인 남녀평등의 문제가 논의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개인의 차원을 탈피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최초로 사회적 담론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1860년대초 천도교에 의해서였다. 이러한 부분적 사회담론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1900년을 전후로 하여 개회지식인들이 근대화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고 그 일환으로 여자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부터였다고 하겠다.

1900년대를 전후해 가족윤리를 둘러싼 담론이 신문을 중심으로 사회화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전통적 가족윤리가 변화된 것은 아니다. 담론은 문제제기와

시비를 논하는 토론의 성격을 지닌 것이어서, 이러한 개화세력의 사회적 담론내용이 민중의 가족윤리를 변모시키는 데는 당시의 사회적 조건 및 실상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요하게 된다.

개화세력들에 의하여 가족윤리 문제가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사회적 담론으로 활성화되었던 1900년대 전후 당시의 민중적 가족윤리의 실상은 어떠했는가?

첫째, 부부윤리는 소수개화집단의 경우 평등을 이념적으로 지향하고 있으나 대다수 일반대중은 남존여비의 관습을 고수하여 아내를 천시하였으며 둘째, 부모는 자녀를 노후의 경제적 보험으로 생각하거나 특히 딸의 경우 일부 지역(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서 경제적 상품으로 삼았을 정도로 민중의 일상생활에서 경제문제는 대단히 심각하였고

셋째, 아들과 딸간의 인격적 관계를 보면 이념적으로는 일부 개화 지식인들 사이에서 평등관계를 추구했으나 대다수 일반민중은 가문의 계승자이며 인격체로 아들은 대우했고, 딸은 가사 노동력의 대상이거나 자녀를 생산하는 예비 존재로서만 간주하였다.

한편, 아들과 딸의 인격적 평등에 대한 사회적 실천 과정에서 흥미를 끄는 것은 한글의 국문채택 필요성이 남녀교육평등의 실천적 중요 대안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조선말기까지 아들은 부잣집에서, 딸은 가난한 집에서 주로 조혼을 했으나 1900년대를 전후해서는 부잣집의 경우 남녀를 막론하고 조혼을 시켰으며 가난한 집에서는 물질을 중시하는 결혼 풍습으로 인하여 주로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조혼이 행해졌고

다섯째, 특히 이 시기의 특징적인 현상은 봉건적 유교가족윤리의 핵심적 근간이었던 가장권이 과도한 예물과 매매혼적 성격의 풍습으로 인하여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절대 다수의 경제적 빈곤 계층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었으며, 빈민계층에서의 가장권에 대한 등요는 여성의 가출이나 이혼제기로 나타났고

여섯째, 일본에 유학한 개화지식인들이나 제사를 우상숭배로 간주하여 조상숭배를 배척한 기독교신자들을 통해 서구가족윤리가 수용됨으로써 일반민중들은 전통적 유교가족윤리의 고수를 애국으로 인식하였다.

## ■ 참고문헌

### 1. 1차자료

- 1) 한성순보
- 2) 독립신문
- 3) 제국신문
- 4) 황성신문
- 5) 대한매일신보

### 2. 2차자료

#### A. 저서 및 논문

- 국내 저서
  - 1) 이 황(퇴계), 『규중요람』, 1501.
  - 2) 권오호, 『부인소학』, 도서출판 다물, 1994.
  - 3) 김두현,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 4) 김태길, 『한국윤리의 재정립』, 철학과 현실사, 1996.
  - 5) 김형석·조우현·배종호 공저, 『인간과 윤리』, 박영사, 1989.
  - 6) 박유봉·서정우·차배근·한태열 공저, 『신문화이론』, 박영사, 1987.
  - 7) 신용하, 『한국근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0.
  - 8) 신정숙, 『전통사회의 여성생활』, 대광문화사, 1986.
  - 9) 아산복지재단, 『현대사회와 가족』, 1986.
  - 10) 이광규, 『한국가족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7.
  - 11) \_\_\_\_\_,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1978.
  - 12) \_\_\_\_\_, 『한국가족의 심리문제』, 일지사, 1984.
  - 13) 이규태 저, 『한국인의 의식조사』 No. 1, 신원문화사, 1995.
  - 14) 이수광, 『지봉유설』 권2.

- 15) 이인직, 「설중매」, 『정수(精髓) 한국문학전집』, 제3권, 문호사, 1967.
  - 16) 이효재, 『가족과 사회』, 경문사, 1987.
  - 17) 이희배·김주수, 『가족관계학』, 학연사, 1986.
  - 18) 임병수, 『한국의 윤리』, 삼화출판사, 1983.
  - 19) 정진석, 『한국언론사』, 나남, 1990.
  - 20) 최 준, 『한국신문사론』, 일조각, 1982.
  - 21)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1977.
  - 22) \_\_\_\_\_,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1985.
  - 23) 최재율, 『가족사회학』, 전남대학교 출판부, 1988.
  - 24) 페이스 R. 엘리엇 지음, 안병철·서동인 옮김, 『가족사회학』, 을유문화사, 1993.
  - 25) 경제기획원, 1960, 1966, 1975, 1980, 1985 『총인구 및 주택 센서스』.
- 논 문
- 1) 고영복, '전통사회의 효개념과 현실적 과제',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아산사회복지재단, 1983.
  - 2) 김태길, '한국가족윤리 소고', 『효정 채수한 박사 회갑논문집』, 1984.
  - 3) 서병숙, '가정학과 윤리', 『대한가정학회지』 29권 2호.
  - 4) 성규택, '한국인의 효행에 관한 연구: 전통윤리의 현대적 조명', 『연구논총』 87-2, 1989.
  - 5) 손인수, '한국인의 전통적 윤리의식', 『정신문화연구』 통권 18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6) 송 순, 「유교, 원불교 사상에 나타난 가족윤리와 아동교육」,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 7) 옥선화,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의 전통성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Vol. 1, No. 2, 1983.
  - 8) 윤사순, '한국인의 전통적 윤리관', 『정신문화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9) 이정덕, '한국의 전통적 가족윤리에 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권 2호, 1985.
  - 10) 이효재, '한국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한국가족론』,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가치, 1990.
- B. 일반잡지
- 1) 백세명, '백년전 한국에도 여권운동이 있었다', 『여원』, 1958년 1월호.
  - 2) 이해영, '고독의 벼랑에서 50년', 『가정생활』, 1963년 2월호.
  - 3) 이희승, '꿈처럼 늙은 금슬(琴瑟)', 『여원』, 1960년 7월호.
  - 4) 조연현, '가족제도는 이렇게 고치자', 『가정생활』, 1961년 9월호.
  - 5) 이상백, '가족제도의 폐단', 『가정생활』, 1961년 9월호.
  - 6) 양주동, '여성의 남성화', 『여원』, 1958년 1월호.
- 국외 저서
- 1) Ambrose, Peter ; Harper, John and Pemberton, Richard *Surviving Divorce : Men Beyond Marriage*, London, Harvester Press, 1983.
  - 2) Anderson, Michael *Family Structure in Nineteenth Century Lancash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 3) Angell, Robert C. *The Family Encounters the Depression*, New York, Scribner, 1936.
  - 4) Archer, John and Lloyd, Barbara *Sex and Gender*, Harmondsworth, Penguin, 1982.
  - 5) Ari s, Philippe *Centuries of Childhood*, New York, Random House, 1962.
  - 6) Berger, Brigitte and Berger, Peter *The War over the Family*, London, Hutchinson, 1983.
  - 7) Bott, Elizabeth *Family and Social Network*, 1st ed., London, Tavistock, 1957.
  - 8) Cherlin, Andrew *Marriage, Divorce, Remarriag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9) Chodorow, Nancy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Berkeley,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 10) Delphy, C. *The Main Enemy*, London, Women's Research and Resources Centre, 1977.
  - 11) Donzelot, Jacques *The Policing of Families*, London, Hutchinson, 1980.
  - 12) Eekelaar, John *Family Law and Social Policy*, 2nd

- ed., London, Weidenfeld & Nicolson, 1984.
- 13) Engels, F.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first published 1884), London, Lawrence & Wishart, 1972.
  - 14) Goode, William J.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New York, Free Press, 1963.
  - 15) Gordon, Michael *The Nuclear Family in Crisis : The Search for an Alternative*, New York, Harper and Row, 1972.
  - 16) Hamilton, Roberta *The Liberation of Women*, London, Allen & Unwin, 1978.
  - 17) Harris, C. C. *The Family*, London, Allen & Unwin, 1969.
  - 18) Innis, H.A., *The Bias of Communication*, Toronto, Canada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51.
  - 19) McLuhan, M., *Understanding Media : The Extension of Man*, New York : Signet Book, 1964.
  - 20) Sharp, C. E. , *Motive for Review Seeking Christ*.
  - 21) Zaretsky, Eli *Capitalism, the Family, and Personal Life*, London, Pluto Press, 1976.
  - 22) 井上角五郎, 『福澤先生の朝鮮御經營と現代朝鮮の文化とに就いて』, 東京, 1934.
  - 23) 清水盛光, 『家族』, 岩波書店, 1958.
- 논문
- 1) Ball, D. W. 'The Family as a Sociological Problem', in Skolnick, A. and Skolnick, J. H.(eds) *Intimacy, Family and Society*, Boston, Little Brown, 1974.
  - 2) Barrett, Mich le and McIntosh, Mary 'The Family Wage : Some Problems for Socialists and Feminists', *Captial and Class*, 11, 51-72, 1980.
  - 3) Bell, Norman W. and Vogel, Ezra F. 'Toward a Framework for Functional Analysis of Family Behaviour', in Bell, N. W. and Vogel, E. F. (eds), *A Modern Introduction to the Family*, revised ed., New York, Free Press, 1968.
  - 4) Burgoyne, Jacqueline and Clark, David 'From Father to Step-Father', in McKee, L. and O'Brien, M. (eds.), *The Father Figure*, London, Tavistock, 1982.
  - 5) Campbell, Beatrix 'Sex - a Family Affair' in Segal, L. (ed.), *What is To Be Done About the Family?* Harmondsworth, Penguin, 1983.
  - 6) Coser, Rose L. and Rokoff, Gerald 'Women in the Occupational World : Social Disruption and Conflict', *Social Problems*, 18, 535-54, 1971.
  - 7) Feldberg, Roslyn and Kohen, Janet 'Family Life in an Anti-Family Setting : A Critique of Marriage and Divorce', *The Family Coordinator*, 25, 151-9, 1976.
  - 8) George, Margaret 'From 'Goodwife' to 'Mistress' : The Trasformation of the Female in Bourgeois Culture', *Science and Society*, 152-77, 1973.
  - 9) Hartmann, Heidi 'The Unhappy Marriage of Marxism and Feminism : Towards a More Progressive Union', in Sargent, L. (ed.), *Women and Revolution*, London, Pluto Press, 1981.
  - 10) Hunt, Judith and Hunt, Alan 'Marxism and the Family', *Marxism Today*, 18, 59-61, 1974.
  - 11) Parsons, Talcott 'The Social Structure of the Family', in Anshen, R. N. (ed.), *The Family : Its Function and Destiny*, New York, Harper & Row, 1949.
  - 12) Rushton, Peter 'Marxism, Domestic Labour and the Capitalist Economy', *Sociological Review Monograph*, 28, 32-48, 1979.